

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0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0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10. 12) 상정
- 제12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5. 10. 12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감사실장 최 중 화)

가. 제안이유

-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(2005. 2.11, 대통령령 18698호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변경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함.(안 제6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| 답변 내용 |
|--|---|
| <input type="radio"/> 본 조례 개정안 상정 이유는? | <input type="radio"/>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 |
| <input type="radio"/> 본 조례안의 주요 기능은? | <input type="radio"/>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확인 및 심사 등이 주요 기능임. |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436호 |
| 의결 년월일 | 2005. 10. 21 (제122회) |

제출년월일 : 2005. 10. 4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(2005. 2.11, 대통령령 18698호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변경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함.(안 제6조제2항)

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” 를 “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재적위원” 을 “출석위원” 으로 하고, 동항 제1호중 “법 제8조제6항” 을 “법 제8조제7항” 으로 “법 제8조제11항” 을 “ 법 제8조제12항” 으로 한다.

제1항중 “공직자윤리법” 을 “「공직자윤리법」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<u>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</u></p> 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<u>재적위원 3분의 2</u>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1. <u>법 제8조제6항</u>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<u>법 제8조제11항</u>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</p> <p>2. ~ 4. (생 략)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 | <p><u>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출석위원----- -----</p> <p>1. <u>법 제8조제7항</u>----- ----- 및 <u>법 제8조제12항</u>----- 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|